

## 제2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5. 7(금), 16:00 ~ 21:30

2. 장 소 : 울곡관 제1회의실(울곡관 204호)

3. 참석 : 총 13명 중 11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이재호, 임재수, 박철균, 김용호, 임원형, 이해진, 김관균, 박상호 평의원(이상 11명)
- 불참 평의원 : 오동석, 박윤규 평의원(이상 2명)

### 4. 회의안건

#### 가. 의안(자문 및 심의)

- 안건1 : 200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사항)
- 안건2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사항)
  -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약학대학' 신설
  -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 : 약학대학 정원 반영 및 자유전공학부 정원 조정
- 논의사항 : 2010년 능력별 연봉제 추진 경과와 능력별 연봉제 도입(안)

###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재적평의원 13명 중 11명의 대학평의원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자문사항으로 2009학년도 교비회계결산(안)이 있고, 심의사항으로는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있으며, 논의사항으로는 2010년 능력별 연봉제 추진 경과와 능력별 연봉제 도입(안)이 있습니다.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의 일정이 있으니 논의사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능력별 연봉제가 확정된 제도인가 이 제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교수님들이 의문이 참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기획처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능력별 연봉제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능력별 연봉제

< 간서명란 >

의장

박영무

도입(안)은 대학의 미래 환경변화 대비, 대학 간 경쟁의 가속,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2008년에 처음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은 지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경쟁력을 높이자, 연구성과를 높이자는 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연봉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과를 쭉 보시면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주비전 2023을 세우면서 그 중에서 경쟁력 강화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추진경과 페이지를 보시면 처장회의에 계속적인 초안을 보고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8월 보직교수 세미나에서 논의가 되었고, 2009년 10월 학장 간담회에서 도입(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교무위원회 및 보직교수 연석회의에서도 도입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입(안)이 수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일에 학장회의를 개최해서 도입(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했고, 참석자들은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학장 및 처장입니다. 2009년 12월 7일 처장회의를 개최해서 학장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을 하자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신임교원 초빙 8명 공고가 나가면서 여기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교무처장 흥만표 : 2010년 신임교원 8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시에 3년 후 능력별 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지를 했고, 신임교원 선발 이후 오리엔테이션 때 각 개인에게 3년 후 재계약을 할 때 능력별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경과보고는 여기까지고, 그 것을 지난 4월 이미 신임교원에 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사실과 함께 원래 재임하고 계시는 교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시면 시행하겠다는 안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흥보자료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학내 교수들께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며, 교수들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언론에 배포하여 시행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도 안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안이겠지만 최종 결정이 되었다면 제도로 발표가 되고 교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제출된 안의 내용도 신문에 발표된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신문을 스크랩해 왔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해당 대학 연봉 순위 30위 내외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면 10위 대학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학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교수 연봉에도 이미 연구실적을 반영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엄

< 간서명란 >

의장  
15. 02. 18

격하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보니 타 대학의 연구실적 대비 평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학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학들은 대학마다 특성화가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 대학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대학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평가를 못해서 타 대학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저도 그렇고 교무처장도 그렇고 이 때 보직보수가 아니었지만, 확인결과 공식적인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회의록도 안남기고, 된지 아닌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발표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도 안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안이겠지만 최종 결정이 되면 제도로도 발표가 되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으로 발표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신문에 발표된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신문을 스크랩 해왔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으로 능력별 도입 방안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해당 대학 연봉 순위 30위 내외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면 10위 대학 내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이 확정된 제도인지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확실치 않고요. 제도가 설정되는 과정 자체가 미확인된 것이 많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학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교수도 이미 강력하게 연구실적을 반영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엄격하게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제도를 보니까 타 대학 10%, 20% 기준으로 한다,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가장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대학마다 특성화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타 대학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대학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우리 대학에 타당한 제도인가, 자기 스스로의 교수 평가를 못해서 타 대학하고 비교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제가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해서 못한 다기 보다는 어차피 경쟁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교내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 어떤 학부는 다 잘하는데, 거기서 강제적으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밖에서 나오는 기준이, 의장님께서는 우리가 못해서라고 말씀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훨씬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에서는 내가 제일 낮은데 밖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피해가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사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

< 간서명 란 >

의장 15. 06. 13

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재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신임교수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신임교수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그 결정은 예를 들어서 어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가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지금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학장회의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때 당시 학장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때 안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안전이 이 안전이었고, 그래서 일부 학장님들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한 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12월 27일 학장회의에 결과를 보고했을 때는 더 이상의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12월 7일 처장회의 말씀이시죠?

교무처장 홍만표 : 네, 12월 7일 학장회의, 아니네요, 처장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면서 그 사이에 학장들과 어떤 의견 소통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어떻게 학장들이 여기에 다 동의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보수규정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원론적인 이야기죠.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교무처장 홍만표 :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누가 결정을 해서 내부에 결재가 있어야 되는가는 그 당시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결정됐다고 하면, 총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결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교무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의아했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임교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했었고, 신임교원들께서도 알고 들어오셨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러나 신임교원들에 대해서는 업적평기를, 능력별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3년 후입니다. 3년 후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이 결정에 대해 플러스 요소가 필요하다면 진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

< 간서명 란 >

의장  
11월 21일

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 규정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뚜렷하게 규정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 의결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여기 경과에도 보시면 교무위원하고 보직교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다른 학장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봐왔다는 것이 여기 경과를 봐도 드러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결정된 것처럼 통보가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교무처장 홍만표 :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회의록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고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고가 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쯤 더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홍보자료가 나갔던 겁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학장회의에 어떤 결론이 나서 내부결재가 있었는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월에 신임교원에 대해서 공고가 나간 사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공식의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신임교원에게 이미 공지가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3년 뒤니까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할 테니까 미리 신임교수들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언질을 주셨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좀 전에 지적이 나왔지만, 여기 지금 시안하고 신문에 난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인거지요?

교무처장 홍만표 : 신문에 나왔던 상위 10위권이라는 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 안은 30위권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아는 사람들은 교수들 스스로 평가조차 못해서 타 대학하고 그런 비교를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교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결의되지 않은 채 외부에 공표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는데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시지요.

예산팀장 조경숙 : 공식적인 회의록은 없습니다. 학장회의 진행 당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은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이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 간서명란 >

의장 / 김민경

런 일들이 어떻게 구두로 설왕설래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교무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 구성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신임교원에 국한해서 시행한 것이 앞으로는 나갈 방향이라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교무회의에 올려야 된다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의장 박영무 : 최종회의가 12월 7일 처장회의로, 학장회의 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 데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뭐가 보고되었는지요?

교무처장 홍만표 : 신임교원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그 날 처장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7일 처장회의 개최, 학장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때 몇 월 몇 시, 참석자는 누구이다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예산팀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 박영무 : 신임교원의 문제이니까 현재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아주대의 미래는 신임교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이런 제도가 좋은 교수를 모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학교에 누가 좋아서 가겠느냐고 합니다.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참신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교수사회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타 대학하고 연구 실적을 비교한다고 칩니다.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요구를 해야할 터인데, 신임교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 대학과의 비교 자료는 만드셨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교수 연구실, 연봉, 강의 부담,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먼저 되어야 될 터인데 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비교분석자료는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홍보가 나갈 때 결정은 누가합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결정은 지난 번 처장회의 때 이런 게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결정은 제가 합니다. 능력별 연봉제 시행을 한 것이 저희 교무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팀에 보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께서 학교의 홍보는 총장이 일일이 확인하고 내보낸다고 말씀을 학생들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홍보에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지금 발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11/8 020 13

**교무처장 홍만표** : 이 내용에 대해선 능력별 연봉제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팀이 이 내용에 대하여 홍보팀에 알려드렸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총장대 행께서 확인을 하셨겠죠.

**평의원 임원형** : 총장직무대행님께서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권은 총장직무대행께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교무처장 홍만표** : 총장직무대행께서 수정을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무처에서 홍보거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교무처장 홍만표** : 그렇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보직자로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제가 그런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이미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홍보자료로 보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개인적으로, 120%를 주고 이런 것이 교수 입장에서 꼭 좋은 방법인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드신 전임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입장 보다는 학교가 그런 결정을 이루어 나간 것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정하지 못해서 타 대학하고 비교하고 의존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행되는 제도가 나름대로 모든 제도라는 게 명암이 있듯이 이 부분도 궁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로 만들어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문제는 왜 그렇게 급하게 해야 했는가입니다. 내부의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홍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정되지 않은 것을 선불리 그리고 정확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선은 이름을 내보자는 의미의 홍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대학이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무처장 홍만표** : 제가 교무처장으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간과했던 것은 신임교원 초빙을 하는 것을 공고가 나는 것만 가지고 홍보한 것은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불찰입니다.

**의장 박영무**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것이죠?

**기획처장 임재익** : 네,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다면 두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은 있었고 의논이 된 적은 있으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바도 없고 학장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제도로서 확정 된 것이 아니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모든 일을 회의록을 남기고 정확하게 찬반 투표를 하진 않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임재익

그 당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나 사안이 경하냐 중하냐에 대한 판단이 애매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안을 집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의견 수렴과정을 굉장히 길게 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면 원칙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큰 원칙은 동의를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이게 동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 신분에 관한 결정인데 그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제 생각에는 신임교원이 들어오면서, 신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를 drive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교원을 뽑는데 좋으나 나쁘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에서 시행을 했다면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절차가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적인 원칙이랄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이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우리 학교 행정이라는 것은 근거를 남기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결정된 것이 되어버리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의사결정과정이 없었지요 라고 질문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학교 처장으로서 의사결정과정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하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결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잖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신임교원 공고가 나가면서 그것이 사실 그냥 아마 교무처에서 혼자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수초빙공고는 교무처에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이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나갔는지는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공고로 나간 것이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명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

< 간서명 란 >

의장  
11/26/2012

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력별 연봉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네 없습니다. 80-120%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비교대학이라는 것도 각 학과나 해당학과가 결정해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차원에서는 큰 룰 말고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80-120%도 정해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정해진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다만 한 가지 교무처에서 신임교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3년 뒤에는 능력별 평가 대상이 되겠다 하고 고지한 것 그거 하나 아닙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네, 그렇습니다. 앞에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보직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때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을 맡아서 처리하셔야 할 입장인데, 이 사안에 대해 두 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확정된 안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각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교무처장 홍만표 : 결국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은 교무처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신임교원 8명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지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입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가 다시 있어야 할 것이고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인가 아닌가는 초기 안에는 현재 재임하고 계신 교수님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면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처에서 할 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신임교원 8명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집행부에서 정확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는다고 해야겠지요.

의장 박영무 : 일반적인 능력별 연봉제는 이미 우리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능력별 연봉제의 문제이자 핵심은 그 평가 방법으로 타 대학의 실적과 비교한다는데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별 연봉제라고 신임교원들에게 혹은 신문에 공고하고 실직적인 내용은 타 대학과의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임교수들에게 소개된 능력별 연봉제는 현재 우리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졌겠지요.

교무처장 홍만표 :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본부에 오기 전에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도 저도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평교수로 있을 때도 꼭 이 제도가 아니라 타 대학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2016. 06. 13.

교내에서 뭔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한 연구업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학교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중앙일보에 밀려 놓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무처장이 아니라 평교수였을 때도 비교를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능력별 연봉제를 시행하고 교수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채찍 뿐만 아니라 당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학사회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거쳐 지지 않은 것이 설익은 채로 그냥 나가버리는 상황이 문제지요. 사실은 나갔다고 해도 그것을 꼭 주워 담아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것이 한번 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차제에 이것을 다시 공론의 장으로 넘기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6개월 뒤건, 1년 뒤건 너무 늦어지지 않는 시점에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밖으로 노출된 것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고, 말하자면 일종의 사고라는 것이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논의는 많이 되었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나아가자는 선언적인 데서 안이 만들어 진 것이고 그 정도의 선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의사결정을 거쳐서 시행규칙까지 갖춰놓고 하는 것이 완벽한 제도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비교도 해보면서 우리의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에서 그 안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 중 80-120%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논의 과정에서 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없이 내보내는 것이 불찰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보니 공고도 구체적으로 못내보내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 과오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오는 인정을 합니다. 대학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시행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배워가는 러닝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주동표 :** 지금 말씀은 평교수라면 참 적절한 말씀인데 앞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나가는 보직교수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 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두 분 말씀하시기

< 간서명란 >

의장  
113 09. 12

를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된 걸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됐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직자들이 그런 의사결정이 없이 일을 처리했었는지도 모르고, 신문 공고 같은 것이요. 당연히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하고, 학교행정이라는 것이 학교총장이 아무리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기록 없이 아무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과정에 있던 사항이 사고로 밖으로 나간 거 같다, 그런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기정사실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의하자 이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의사결정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행정하면서 처장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수정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기정사실화하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석을 하는 거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인하는 것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의사결정이라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다보면 일의 경증의 차 이를 따지다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를 시행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좀 더 개선을 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의사결정 과정은 있었는데, 최종 의사결정은 안 되었고, 제도가 확정은 안 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결정은 안 되었고, 앞으로 같이 만들자. 이 자리도 논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논의의 과정은 있었지만 제도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 제도는 결정이 안 된 것이고, 타당성과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 기획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의 평가 작업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데, 그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하고, 둘째로 어느 대학이나 연구 교육환경이 중요합니다만 근래 우리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과 지원제도 등이, 특히 공간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대학과 비교대상이 될 만한 대학들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먼저 확보되어야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나은 것은 낫다고 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적어도 우리하고 비교할만한 대상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 구성원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 간서명란 >

의장  
임재익

우리와 비교할만한 대학의 연봉, 강의부담, 연구 공간, 실직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 확보율, 교수 대비 학생 수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10여 년 전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완해서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무처장 흥만표 : 다만 한 가지 신임교원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임교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신임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거쳐 제도로 확정 후 시행해야지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설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임교수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무처장 흥만표 : 그 분들한테는 인지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일간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첫째는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하는 일반직원들은 최고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봉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가테이블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면 첫 번째 홍보가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평가방법을 준비해서 8명의 신임교원들에게 평가항목범위, 연봉, 직책 등을 준비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단계와 결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다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해서 단순히 학교를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되어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한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정리하겠습니다. 능력별 연봉제는 논의 과정은 있었으나 교무회이나 여타 회의에서 기록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한 제도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능력별 연봉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다음은 200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입니다. 의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행정부원장님 인사해주시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을 위해서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환자 진료해서 좋은 병원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원회계 결산자료는 배부해드려서 보셨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11/26. 13

- 2009학년도 의료원(의과대학 교비회계 제외) 결산(안) 수입 및 지출  
359,777백만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박영무 : 설명 감사합니다. 2009학년도 의료원 결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병원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353억원인데, 내역확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임상교원인건비가 224억원 정도, 의대 간호대 운영비가 103.9억원, 이 103.9억원은 기초교원 및 교직원 인건비 총액이 103.9억원이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리고 웨딩센터건축자금이 65억원, 그리고 본교운영비 설계용역비가 0.27억원, 그래서 본교운영비 323.2억원, 제가 본교하고 관련하여 확인한 바로는 2009학년도에 토지 매입이 있었고 병원에서 16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16억원은 어떤 항목에 들어 있는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병원에서 자산을 따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우학원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산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로부터 학교 테니스코트 뒤편에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땅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매입비용이 전체적으로 6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사용하고 병원도 사용하고 법인은 자산 취득의 부분도 있고 해서, 병원도 분담해서 사용정도에 따라서 분담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16억원을 부담해서 땅 매입하는 비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출했습니다.

의료원 정완식 팀장 : 16억원은 명세서에 보시면 의과대학 간호대학 운영에 보시면 10,385백만원 정도인데, 그중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추가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393억원 중에서 임상지원인건비로 224억원, 그 밑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운영이 104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부분이 지금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본 자료 6p에도 보면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327억 원을 얘기하면서 임상교원급여 224억원, 기초교원 외 103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억원을 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6억원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자료 6쪽에 있는 327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면 임상교원인건비 224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기초교원 외 103억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48억원하고 사업운영임대료수입에서 넘어간 숫자 39억원과, 아까 본교 운영비 토지매입비 16억원, 이 세 가지를 합친 숫자가 그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운영비 48억원하고, 토지매입비 16억원하고 또 한 가지가?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사업임대료지원 3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건 지하 1층 등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원 정완식 팀장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49억원 임대료 중에 39억원이 여기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 지출면에 있어서는 돈의 소스가 다르다는 거지, 임대료 39억원하고 운영비 48억원은 어차피 의대 기초교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활용되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평의원 조중열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원, 의대, 재단 사이에 전입전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전에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전입전출 표시하실 때 날짜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별도로 추가로 표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건수가 빈번히 이루어지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비고란에라도 큰 금액은 날짜표시를 해주십시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해외잡지 구독하지 않습니까? 본교 도서관하고 같은 라이센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같이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자세히 그 부분까지 같이하면 어렵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의학계 저널 구독은 학교의 저널 구독하는 것과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사업체의 요금을 물리나보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학계 같은 경우는 의학계 저널 구독은 통으로 얼마라고 구독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학교하고 요금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병원 수익자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도 병원에서 하지요? 어린이집 수익이 7억원인데 비용이 13억원이나 났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아니요, 비용이 애 보는데 13억원이나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1달에 거의 1억원이나 든다는 셈인데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교사가 25명이고, 교사 인건비, 운영비, 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115명

평의원 조중열 : 산학교육원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냅니까? 안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임대료는 어린이집 비용 지출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임대료를 누구에게 내고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법인에 내고 있습니다. 월 3,100만원 정도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원래 리모델링비용으로 발생한 15억원을 5년에 걸쳐 임대료형식을 빌려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200명 정도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잡손실 52억 원인데, 52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중에 의료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의료보상금은 18.9억원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주로 그 잡손실에 보시면 52억원하고, 잡이익 24억원하고는 맞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39응급으로센터 관련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잡이익으로 집행합니다. 지출하게 되면 잡손실에서 빼지게 됩니다. 아까 보신 사업운영비용과 사업운영수입처럼 수익 비용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의료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뉴스에 나온 것인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벌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공정거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의원 조중열 :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2.7억원 납부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것은 어디 계정에서 납부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관리운영비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벌금은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하는데, 그 관행을 벌금을 맞았으니까 앞으로는 고칠 겁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 리베이트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럼 벌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선택 진료비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반 특진제도, 피부과라던지 외과라던지 해서 선택진료를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던지 피검사를 한다던지 할 때 그 검사결과를 판독하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서 선택 진료비가 부과가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나는 그 분 얼굴도 못 봤다고 하면 혹시나 강제적으로 선택 진료비를 부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공정

< 간서명 란 >

의장 / 5명うち

거래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보건사회부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벌금은 했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을 내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벌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납품하는 업체가 리베이트 해서 뒤로 부과적인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저는 뉴스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곁보기 인상은 납품해택을 받고 그 중 수익의 상당부분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벌금을 맞은 것 아닙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언론 상으로 보도는 그렇게 되었으나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큰 회사를 보면 대부분 납품을 한곳에서 받지 않고 2-3개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비교해보는데, 병원도 지금 납품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저희가 책결상을 산다던지 또는 공사를 입찰한다던지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께서 약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이 회사의 이 약이 이 질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사달라고 하시면, 입찰이나 두 세군데 경쟁 입찰을 할 순 없습니다. 소모품의 경우 여러 가지 물품을 놓고 품질검사도 하고, 사전 사용검사도 하고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소모품이 들어오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대형회사가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30-4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하여튼 저는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TV에 벌금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가성으로 받았던 기부금이 아니었고, 우리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연구를 위해 지원했다던 지, 특정한 목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것이었고, 대가성 기부금은 없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료보상금 18억원이 있는데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때로는 실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들이 의료분쟁으로 몰고 가서 재판을 하거나 합의를 봐서 의료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가추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 건은 저희 병원을 사직하신 분이었는데, 진료상의 잘못

< 간서명 란 >

의장  
김형식

이 있어서 과다한 의료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들이 고객상담실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협상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상사를 통해 매입한 것이 2009학년도에 얼마 정도됩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300억원 정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수도상사에서 발전기금으로, 얼마의 기부금을 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25억원 정도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재료비 1,203억원 중에서 300억원이면 엄청나게 크네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재료비에는 약값이 대부분입니다. 700억원 정도의 약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2008년도던가요, 아주대 의료원하고 베트남하고 의료지원 MOU 맺은 게 있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저희가 베트남 의료지원 MOU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 재단에서 연간 3억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3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2008년도 가을부터 지원받기 시작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무료 의료봉사사업을 하고 있고, 병원비를 펀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의 젊은 의사 4명을 초청해서 1년간 수련을 시켜서 수료해서 베트남으로 귀국했고, 금년에는 8명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다문화 사업은 학교와 관계없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학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도에서는 주로 의료원하고 하거나, 대학병원하고는 지원사업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의장  
의장

- 2009학년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수입 및 지출  
53,277백만원에 대해 설명하다. -

**평의원 이재호 :** 전입금명세를 보면 부속병원 전입금 272.3억원이 있고, 대우학원으로부터 경상비, 법정부담금 35억원 정도, 교내전입금이 20억원 정도, 산학협력단 오버헤드가 20억원 정도, 전체가 347.8억원입니다. 병원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의과대학 쪽으로 가게 된 것이 65억원 웰빙센터는 법인으로 간 거고, 나머지를 보면 328억원 정도여야 하는데, 부속병원전입이 272.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운영지원도 고유목적사업 전입금 중에 포함이 되어서 34.8억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대간호대 운영비라는 게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중 의대간호대로 가지 않고 토지매입에 쓰인 16억원을 제외하면 약 88억원 ( $103.9-16=87.9$ 억원) 정도가 될 것이고, 임상교원 인건비와 합치면 312억원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272억원하고 비교하면 역시 차이가 나는데요.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의과대학 교비회계에서 전입 받은 금액은 347.8억원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전출해준 272.3억원, 병원에서 들어온 부분이 34.8억원 되겠습니다. 교내 기금에서 운영비로 20.3억원,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에서 20.4억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347.8억원이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결국에는 병원에서 전출된 것을 보면, 임상교원 인건비 224.1억원은 의대전입금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의대간호대 운영비 103.9억원 중에 토지매입비 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대간호대로 가는 돈이지요? 그러면 88억원( $103.9-16$ 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임상교원 인건비 224억 원하고 합치면 312억원이 의대간호대로 병원으로부터 전출된 겁니다. 그런데 의대간호대에 남아있는 전입금 명세서를 보면 부속병원에서 전입된 액수는 272.3억원으로 4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료원 정완식 팀장 :** 사업임대료 의대 지원했던 게 법인으로 가서 법인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인으로 간 것은 40억원 정도고, 의대에서 의대 및 간호대 운영비 34.8억원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지금 이 임대료라는 게 병원 지하 임대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인으로 간 다음에 법인에서 올 때는 경상비와 법정부담금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료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법인에서 가져간 다음에,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과 경상비를 낸 것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도 설명하시기로, 법인에서 임대수입을 가져가시는 것, 결국은 법

< 간서명란 >

의장 15.06.13

적인 주체가 되어서,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근데 다시 올 때 명목이 법인이 응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혹은 경상비전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갖고 갔다가 다시 주면서 이건 내가 주는 거야 하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불법은 아닙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출 항목 중에 전출금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서 쓰는 공간에 대한 전기세라던가 이런 것이 넘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넘어오는 등록금 수입 말고, 관리비용으로?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과대학으로 넘어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는 48억원입니다. 학교 전기세라던지 이런 부분은 학교와 병원간에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은 상호상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대신설 때문에 학교가 자금압박을 받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학교 운영 경영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대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약대부분은 성격상 본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의료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가 의료원에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대가 신설되면서 약대 신설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해결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부분만큼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비용 구조나 이런 것은 기획팀과 항상 의논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기획팀장님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학대학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으로 같고, 학교가 학교발전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학교와 병원이 함께 참여해서 학교 발전을 모색해나가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적인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기회가 되면 약대부분 신설에 대한 학교의 예산상의 운영 압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상위레벨에서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꾸 운영자들에게 맡겨 놓다보니까 이거저거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식구다 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숫자를

< 간서명 란 >

의 11월 26일

가지고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임대료 수입 493천만원 장례식장 22억원이 있었고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임대료 수입에는 임대료 시설 수입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법인에서 계약자로 되어 있는 시설 임대료 수입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사용료 수입 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 수입은 39억원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와 법적부담금 34.9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나머지 4억원은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9.8억원을 임대료로 법인 전출을 했습니다. 전입은 경상비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전입으로 34.8억원을 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07학년도 결산때 5억원이 남았고 2008학년도때 5억원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법인에 임대료 수입으로 전출되어져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5억원은 법인에 전출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평의원 이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의견이 없으신가요?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그걸 누가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명확히 갈렸었지만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내홍을 겪었지만 어찌됐든 법인이 313억원의 건축비 원금을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다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임대수입 계약자 당사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있었고, 다시 그 상황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생각한건 법인이 채무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학년도 말로 313억원은 다 채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랄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원님 말씀은 임대료 전출된 것 중에 일부 차액이 313억원 상환에 쓰였다는 뜻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건 아무도 모르죠. 5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매년 예측가능하게 법인으로 전출하는

< 간서명 란 >

의장 13.08.13

것,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평의원님께서 솔직한 마음을 전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기획팀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과대학, 간호대학과 학교간에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서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 보다는 서로 공식적인 투트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약대 신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로를 만들자는 건 아니고, 예산의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저도 학교에 20여년간 재직하다가 병원에 간지 한 3년 됐습니다만, 학교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병원에 대한 물이해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보면 이건 좀 학교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집단, 같은 울타리, 같은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과 학교 간에 금을 가른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아주대학교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나서 평의원에서도 기획팀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30분간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

간사 김근태 : 13분 중에 9분이 참석했었는데, 이해진 평의원과 박상호 평의원 2분이 가셨고, 새로 오신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현재 9분이 계십니다.

의장 박영무 :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교비회계 결산(안) 보고 부탁드립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2009년도 교비회계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학년도 본교 교비회계 결산(안)(의과대학 교비회계 포함) 수입 및  
지출 224,825백만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박영무 : 질문 있으면 질의해주시지요.

평의원 임원형 :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결산에서 학생 경비 중 장학금이 전년대비 25억원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박영무

**총무처장 김경래** : 지출사항에서 학생경비 장학금 전년도대비 25억원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조경숙** : 장학금은 학비감면과 합쳐져서 비교해야 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학비감면은 등록금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장 조경숙** : 지금 저희가 계정분류를 학비감면과 장학금에 대한 개념분류를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재원 즉,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되는 장학혜택을 장학금으로 대분류를 했고, 내부적인 재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학비감면으로 계정분류를 재확정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과 학비감면이 계정분류 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금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원인도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결산액을 볼 때 장학금은 전년대비 25억원 줄었지만, 학비감면은 49억원 증가되었기에 장학금과 학비감면이 줄어 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김관균** : 평의원회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총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같이 오신 분은 보충 설명하셔야지, 바로 같이 오신 분이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하더라도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예산팀장 조경숙** : 네, 알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준비를 해 오셨는지요?

**총무처장 김경래** :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서, 여기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비감면과 장학금 분류를 할 때 정의를 다시 했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학비감면으로 주지 않고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학비감면으로 줬던 건가요? 기존 것과 지금 것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에서 퍼센트 비율로 학비감면 형식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학비감면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총무처장 김경래** :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예산팀장 조경숙** :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례규칙상 장학금과 학비감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딱히 규칙상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비감면과 장학금을 사실상 혼용해서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장학금과 학비감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세워보자고 2009년도에 다시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혜

< 간서명란 >

의장  
11/5.20.09

택을 받는 학생이나 집행하고 관리하는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인지 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재원이냐 내부 자체조달재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리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그전에는 학교에 모든 장학을 임의적으로 해왔다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경숙 : 임의적으로 해왔다기보다는 예산관리부서와 편성 부서간 또는 부서와 부서간에 이해 해왔던 대로 분류되었던 것입니다. 단대, 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적용해왔던 방법들이 다양한 장학제도로 인해 혼용되어 왔던 것을 정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장학금과 학비감면 두 개 숫자가 증가감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그러면 장학금이나 학비감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학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비감면은 높아졌고 장학금은 내려갔고 그러면, 학교로 보면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예산팀장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무 :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그것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펀드 내용 공개를 ABC증권사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표가 언론에 그대로 났고 그 다음에 어제 회의를 하고 모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언론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학교 홍보를 할 때 열 가지 좋은 것을 홍보해도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기사화되어버리면 학교 평판도나 이런 부분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목적이 결산 자문이니까 자문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오늘 안드린 것은 펀드 개별 구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셨는데, 그 정보는 또 저희가 파장, 어떠한 나쁜 반향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요청하시는 포맷의 데이터를 채워 넣어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첨부해드린 자료 중에 자금 운영회의에 관련된 회의록도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자금투자 결정 시점이나 다음에 말씀드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주식 혼합형별로 투자금액 제시한 것을 보시면 아마 대충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박영무 : 이 자료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논의된 능력별 연봉제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이 전혀 밝혀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언제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과정에 의한 얘기는 작년 평의원회에서도 설명이 된 걸로 알고

< 간서명란 >

의장 11/26. 13

있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총무처장이 자금운용 내부전결권을 통해 집행을 한 것이고 그렇게 공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2009학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전체적으로 펀드에 대한 규모나 손실액...

의장 박영무 : 간단하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다는 각 금융기관별로 투자펀드별로 자료가 있지요?

총무처장 김경래 : 네,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그게 언제 어떻게 결정됐다는 회의록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회의록이 아니라, 내부 자금집행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분산투자를 위해 부동산,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해당되는 부분에 상품제안서를 받아 검토를 거쳐 내부결재 후에 자금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당시 총무처장께서 작년 회의 때도 경위를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설명하신 걸로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은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뭘 새로 알게 됐느냐면 펀드 투자가 시작된 2007년 2월부터라는 시점을 알았고, 놀라웠던 게 하나는 2007년 12월에 가서야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펀드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따라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를 알겠지만 사실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면 그 펀드 이름을 몰라도 의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유출되는 게 걱정이어서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의혹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에만 집중하면 될 것을 정보를 감춤으로 해서 쓸데없는 의혹,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펀드 28억원에 대해서는 선물환거래를 했었고,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구성원들이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쓸데없는 억측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의혹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전반적으로는 이런 말씀하신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도 똑같이 제기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처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전년도 평의원으로 계셨던 유승익 교수님이 다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

< 간서명 란 >

의장 11/5 09:13

토의견조치, 시행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의혹을 가리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개해드리는 정보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드 규모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6개 증권사 15개 계좌에 투자되어 있고, 전체 평가 손실이 4월 26일 현재 41억원 정도 난다는 것과, 앞으로 저희가 적정시기에도 이 펀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영위에서 환매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포트폴리오 과목을 통해서, 부동산펀드에 58억원 들어가 있고, 평가손실이 22억원, 주식형 펀드 85억원중에 평가손실 16억원, 혼합형 펀드 70억원 들어가서 3억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펀드 투자시기별로 어떤 종목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펀드문제가 발생해서 작년 9월 이후로 자금 운영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그 회의록에 투자사 이름이나 펀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있고, 선물환 문제도 회의록을 자료로 드리면서 선물환이 걸려있는 당사자 은행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신 양식의, 특정사 특정펀드의 표만 안 채웠다 뿐이지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종합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요구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될 일을, 이렇게 각각의 퍼즐 맞추기처럼 알아가게 만드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작년에 저희가 1번에 나와 있는 자료 이것을 표로 정리해서 증권사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해드린 표 자체가 언론 신문에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번에도 다 정리해서 드린다고 하면 또 공개된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에 요구하신 정보들에 대해서는 볼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작년에 그럼 세계일보에 A, B사 해서 작년에 그 표가 그대로 공개됐다는 거죠? 그럼 이미 추가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뭉쳐서 현재 평가금액을 내는 여기에 약간 의심이 가는 것이 펀드 한 두 개 정도에서 크게 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고요. 주식형 펀드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07년 2월부터 2007년 8월 정도까지 상당부분이 주식형펀드로 되었는데, 그때 주가지수 1500~2000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대략 1700정도로 잡는다면 지금이 1600~1700인데 어떻게 해서 손해가 -20%가 났는지, 산 시점의 주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부동산이야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주식형펀드는 인덱스에 따라 움직이는데 비슷한 주가에 왔는데 왜 손실이 났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립학교법에서 정기예금이 어느 은행에 어느 이자에 들어가 있는지

< 간서명 란 >

의장  
의장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가를 2007년 재판이 있었는데, 대전법원에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한 판결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페이지에 판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대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공개하라고 하면은 공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뿐 만아니라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감춤으로써 역시 또 이게 왜 몇 개가 이렇게 됐는데 어째서 손실이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관련 자료는 공개되어야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부터 펀드투자가 이루어졌는데, 2007년 12월 28일에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펀드나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투자 당시에는 위법행위였는데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땁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작년에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학교의 교비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항의하고, 최소한 공개를 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이 불법이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학교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법은 아니라고 대답해드렸고 그러나 학생들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학교는 이 날짜는 공개를 안했었고,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개정을 근거로 해서 2007년 개정 이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가 잘못 설명해주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례라고 설명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제가 이해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그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그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법 자체가 제정된 것이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나 위법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그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월부터 사립학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립학교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부터 사립학교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들이 2007년부터 기획처 회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요. 도저히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립학교들이

간서명란

의 

조직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거지, 아주 예전부터 투자를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는 수익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고, 그러다보면 제한된 자원에서 사립학교에서 자금운영과정에서 수익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07년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해지는데요, 법이라는 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게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주는 게 있지요. 사립학교는 펀드나 유동자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그전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인데, 투자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면...

**의장 박영무** : 학교 재산은 위험자산에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이전에는 재무회계규칙 제22조 2항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서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항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하면 예치라 함은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장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 하냐면 원금 손실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상품에 한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펀드는 원금손실의 가능성 이 분명히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처음 2007년 2월 투자한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외환선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4억원이라는 손실을 입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 법의 취지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의, 그야말로 학교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당시를 생각해보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고 한데 그것을 담당팀장이 정하고 처장이 전결해서 토탈 233억원을 그렇게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총장이며 이사장 보고라인에 있어서는 특별히 적시해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233억원이라하면 당시 적립금 총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처장 전결로 다 처리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07년 2월에 자금운영위원회를 만드셨죠. 물론 지금 처장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당시 만들었죠. 그런데 2007년 2월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는데 그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손해가 나면 자기 한테 부담스러우니까 참여를 안했고,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가동이 안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회라고 하면은 제일 책임에서 자유로운 조직인데, 그 위원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투자를 팀장과 처장이 233억원을 그렇게 투자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 간서명란 >

의장  
박철균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니 그렇게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기 여윳돈을 갖고도 위험성이 있는 상품 투자가 꺼려지는 상황인데, 하물며 학교 돈을 가지고 생각해보시지요. 연기금이라던지 우체국이라던지 이런 데서도 가능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양이 전체 기금에서 12%, 우체국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다해야 어제 계산한 바로는 14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손실 나 있는 것이 40억원, 확정된 것이 14억을 뺀다고 하면 85억원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 관 건축해서 올해 말에 추산되는 지급액이 195억원입니다. 그럼 110억원 남습니다. 50억원 기채를 냈지만 택도 없습니다. 기채를 내던지, 등록금 올리던지 병원을 쥐어 짜던지 뭔가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르렀는지, 펀드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건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생 대표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도 평의원 했었고, 올해도 평의원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두 번 겪었습니다. 펀드에 대한 주제로. 평의원회에서 펀드를 가지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내용, 잘됐다면 잘됐다는 내용,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결론이 안 나오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지나간 일인데 잘못된 일은 찾아내서 바로잡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평의원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도 충분한 정보 공개가 안 되면서 추정에 의해서 대화가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문제는 평의원회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의원 임재수 : 이 문제 가지고 혹시 최근에 감사받은 적 있어요?

총무처장 김경래 : 감사는 작년 가을부터 연말까지 기획처 주관으로 자체감사 받았습니다. 감사하신 분들 주신 의견이 과거에 의한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을 해주셔서 대표적인 게, 위임전결규정, 자금운영위원회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감사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책임의 문제인데, 작년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임원형 위원이 지적한대로 작년에는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위법이라는 게 밝혀

< 간서명란 >

의장 박영무

겼습니다. 선의로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팀장하고 총무처장이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관련 법에는 법인과 학교의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입과 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불법이나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한다거나 그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재호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내년도 회계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자금운영 부분에서, 약 대도 해야 되고, 지금 공개된 것처럼 펀드의 일정부분이 잡겨있고, 손실이 발생했고, 종합관도 짓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도 30년 이상 돼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험물을 가지고 있 강의실, 연구실도 학교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민자 기숙사를 지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를 처리해야지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하주차장 공사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 구성원들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얹매이고 그러기 보다는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회 결산 자문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면, 앞으로 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아서 피해가 자꾸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잘못에 대한 반복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등록금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고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켜서, 더 많은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에 기대서 법정부담금을 다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 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부동산펀드, 선물환거래에서 담보를 제공했다고 나오는데, 학교 자산의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 아닙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할 주

< 간서명란 >

의 11/20/2018

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규정을 알고 있으면 불법이냐 아니냐는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평의원 임재수 : 모를 수 있어요?

총무처장 김경래 : 자금운용현황을 보시면 혼합형펀드 70억원은 -4.5%로, 금년 중에 적정시기에 환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식형 펀드도 환매 가능한 시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펀드로, 단기적으로 회복이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시지만, 지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은 후 본 대학교 자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는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운용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부동산 펀드는 계속 가도 호전될 여지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갈아타서 수익이 좋은 것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펀드에 대한 책임문제, 위험성에 대한 투자문제 이런 것을 제속적으로 강조하다보면 저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금융거래는 이사장에게 매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사장께 보고가 되었습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법인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월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만약 보고를 못 받았다면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임원형 : 학생 입장에서, 펀드 투자하면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펀드 운영자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이익이 생기고,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와 관련이 있다면, 압력이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논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검증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어느 펀드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가 거짓말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미 다 공개된 상황 속에서 어느 펀드 투자했는지가 학교가 피해를 본다는 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펀드투자로 학교가 손해 봤다는 사실은 어느 관점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어느 관점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대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대 평가를 했을 때 아주대에서 펀드 투자하고, 펀드투자 손해가 언론에 나간 이후로, 연구소 입장에서는 전국 대학이 펀드 투자를 그만뒀다, 조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대학교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학교가 좀 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은

< 간서명 란 >

의장 *W. 02/13*

학교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팀에서는 대외이미지가 깎였다는 것은 제가 수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할 때 중앙일보 조사를 하면서 대외신인도가 눈에 띄게 수치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가 투명해지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느 펀드인지만 밝혀도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펀드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이 펀드를 왜 투자했는지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총무처장 김경래** : 지금 지적한 대로 지금 학교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평판도, 신뢰도 부분입니다. 아주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스탠더드를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려져서 언론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반면에 좋지 않은 것들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펀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학교만큼 그렇게 투명한 곳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부터는 시가평가를 결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적하시는 어느 펀드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공개 안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임재수** : 투자할 때에 도덕성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손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전에 어느 기관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느냐. 지금 의원들 생각에 대부분이 어떤 타깃을 놓고 접근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난해해져요. 만약 타깃을 정했다고 그러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요청해서 투자할 때 문제가 있었던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할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우리 평의원들은 재발에 대한 문제, 재발방지용 대안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문해드리고, 보충할 부분들은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우리 총무처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투자를 했느냐 왜 손실을 봤느냐 이것은 계속 걸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가 묻는 것은 왜 투자를 했느냐 왜 손실을 봤느냐가 아니라 투자 과정을 왜 투명하게 밝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과정이 명확해져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의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되어 학교에 피해가 온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의혹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요.

평의원 임재수 : 그러시면 총무처장님, 언론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러우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대표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에서 이렇게 결의하면 어떨까요? 교과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총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문 목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 이상의 부분들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셔야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전에 이미 법인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감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섹터를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같이하는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아마 적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해서는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유승익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법인가 적법인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 되었다면 감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할만한 내부집단에 의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내부에서 감사를 해보니 행정당국에 고발할만한 일이 있었다면 고발을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면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작년에 감사했지만 위법이란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면 그 변수를 넣어서 다시 한 번 재감사를 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의원 임재수 : 그때 당시 투자를 결정할 때에 위법인가를 알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위법인지를 알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인지가 안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 목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모르고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장 박영무 :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개인 돈도 아닌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의원 박철균 : 위법이란 것을 알고 못할 것 같은데요? 관행에 의해서 진행해온 것 아닐까요? 2007년 이전에 펀드 투자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2007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도 학교가 투자를 했는지, 최근 10년 정도 자료가 있을까요?

의장 박영무 : 이걸 모두 합쳐서 해서 그렇지, 펀드 개별로 보면 반 이상 손실난 것

< 간서명 란 >

의장 11/28 2013

이 많지요?

총무처장 김경래 :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여부는 여기서 판단 내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법이나 아니나 답변할 위치도 아니거든요.

평의원 임원형 : 사립학교법에 대해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그 규정에 대해서는 항목 별로 손실 50%가 나도, 통으로 50% 이상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확인했고요. 그때 전 총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억원정도 손실이 났을 때 반 이상 손실이 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오늘 결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위법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지금은 투자결정이 총무처장님 전결에서 어디까지 올라 가도록 되었습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지금은 상시자금 결정은 총무처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금 자금배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도록 위임전결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의장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마 다 안온 것 같습니다. 제공안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 결정은 처장님 단독 결정입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알아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동산펀드 중에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펀드가 있는데, 그건 주로 어디에 투자합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그건 부동산펀드는 아니고 주식형펀드입니다. 그건 아시아에서 대표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AP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아시아 대표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특례법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법조문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총무처장 김경래 : 아까 말씀해주신 2007년 12월말에 개정이 된 것이, 기금 중 절반 이상 증권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2010년 3월 1일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금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가로 50%가 됐건 어쨌든 그런 규정 없이 모두가 시가로 들어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계정은 발전기금별로 설정을 해놓고 자금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를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부분들

< 간서명 란 >

의장 *W.S. 이경*

을 각 목적별로 구분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를 증대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결산이 마무리가 되면 예산팀, 경리팀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 요인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아까 이재호 의원께서 관련법 말씀해주셨는데, 실무부서니까 2007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특례법에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는지,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법 위법 여부를 분석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법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했는지를 명확히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 부분이 간과되어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감사뿐만 아니라 결산하면서 내·외부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작년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외부자문을 받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드투자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내용이 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무부서에서 위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를 명확하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형 평의원도 학생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처장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회계재무규칙에서 자금관리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펀드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2007년 3월 부동산펀드 30억원에 대해서 환 헤지를 안했다고 들었는데, 헤지를 안 한 이유가 그 당시에 국내 부동산 펀드가 잘 없었거든요. 있었다면 해외부동산펀드인데, 그것을 원화를 표시하는 게 특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2월하고 3월인데 환 헤지를 했으면 둘 다 하고 안했으면 둘 다 안 했을 텐데, 원화표시 해외 부동산펀드라는 게 있었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해외부동산펀드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근데 해외부동산펀드인데도 원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제가 알기로는 이 펀드는 자체적으로 환 헤지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선물환 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박영무 : 부동산 펀드는 금융기관이 2개고 계좌는 5개입니다. 부동산펀드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 겁니까?

< 간서명란 >

의장 *박영무*

경리팀장 안영찬 : 부동산 펀드는 다 해외입니다.

의장 박영무 : 각 계좌별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총무처장 김경래 : 대략 10억원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나요?

총무처장 김경래 :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포함됩니다.

의장 박영무 : 또 질문 있습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예결산하면 자문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올해는 반드시 자문의견을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당장 2010학년도부터 바뀐 회계규칙에 의해 현 시가로 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방침이 세워졌나요?

총무처장 김경래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하고 나서 TF구성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답답하니까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신문에서 보니 재밌는 게 있던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기부금을 준다는 겁니다. 정당한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금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제일은행은 발전기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교비 유치가 있고, 그 외에 금융기관에 유치할 때는 제시금리를 통해 금리입찰방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받은 것은 SC 제일은행만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SC제일은행에서 발전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처장 김경래 : 매월 2,5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면 처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찬 팀장님, 이 자문의견서를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그건 기획처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저희가 교과부에 최종적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5월 말까지입니다. 법인에서 모든 결산서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 하순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정)

의장 박영무 : 아까 병원하고 교비회계에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크게 봤을 때 문제될만한 것은 의견을 주시면 회의록으로 정리를 하고 자문 지필위원을 3명 정도 정해서 하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재호 : 자문의견을 내면 그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자문의견을 내 놓으면 사후에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작년에는 자문 의견을 심의만 하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작성할 때마다 그다음

< 간서명 란 >

의장 11/6. 11/3

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9년 회계에 대한 결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 한 것은 2007년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2009년 결산에 대한 자문의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건지, 여러분의 감사 내지는 지난 번 회의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하고 끌내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문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산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일 년 동안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현시점에서 파악한다고 하는 거라면...

평의원 박철균 : 2007년 투자에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결산만 놓고 본다면 2009년 3월에 펀드투자가 시가로 얼마로 들어왔는데 회계말년에 시가로 얼마로 정리 되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에 마이너스 요인을 미쳤다 혹은 플러스 요인을 미쳤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회계연도라는 시기, 결산만 놓고 본다면 from-to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관련 법규를 통해서 제출을 받아야겠지만 형식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포함되어야하는지 포함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관련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2007년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2009학년도 자문이기 때문에 from - to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하는 것이 형식상 보다 정확한지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박영무 : 예결산(안)이라는 것은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돈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따지자는 겁니다. 속에 있는 행위를 보는 것이죠. 의사결정이 잘 진행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의원 박철균 : 2008년 2월에 종지부를 찍은 일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포함되서 언급 되어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료원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드러난 것들, 아가 따져본 4억원,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평의원 임재수 : 원초적으로 병원하고는, 제가 개원초기부터 원무팀에 일을 해서 수입관리 부분을 잘 알죠, 그런데 개원 초기에는 진료비, 진료외 수입으로 나누는데, 모든 수입관리는 병원에서 관리하였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법인 운영이 어려

< 간서명 란 >

의장 11/5.026.23

위지자 최근 몇 년 전부터 법인에서 병원 수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진료외 수입에 심한 압력을 행사해서 의료원 기관장, 교수님들과 갈등이 많았지요. 그 예로 어음장을 뺏어가고, 의료원 결제도 지연 또는 반려 등 타 의료원도 그러한 행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째든 진료외 수입에 대해서 법인에서 관리하되 형식적인 절차만 행사하는 걸로 하고 관리하게 했지만 결과는 법인에 들어간 돈이 들어간 만큼 다시 병원에 오지 않고 적게 돌아오고, 법인에서 생색은 부풀려 내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상호 신뢰 없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원 모든 기관장님들께서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다 알면서도 방법적으로 또는 더 나빠지면 병원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내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교수회에서 법인에다 말로만 의심되고, 발목 잡는 행위에 대해서 밝혀라, 제시하라고만 하지 말고 수술 칼을 놓든지 팬을 멈춰 서라도, 맞장을 떠서라도 법인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파업을 해서라도 관철시킵니다. 이런 학교와 법인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학교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재단에 계시다가 병원 전 행정부원장을 하시고 현 대우재단에 계시는 최병현 부원장, 그 분이 법인하고 관계가 깊어서, 학생, 교수, 직원과 법인하고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4시간 중 3시간이나 됩니다. 회의 참석이 너무 피로울 지경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적할 것이 있으면 기록해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부담금 문제도 교비가 50.2%, 병원은 40%? 아무튼 법정부담금 문제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했을 때 음성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측가능하고 의료원도 우리가 이만큼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서로 쳐다보고 허탈하게 웃고 말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아주대학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합니다.

평의원 조충열 : 지나간 한 10년 동안에, 아주대학교에 새로 온 교수님께 아주대 병원이 드라마 촬영했다고 하면 안 믿으실 겁니다. 아니 저런 건물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냐고 하실 겁니다. 종합병원 촬영할 정도로 좋은 병원이였잖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때 투자한 것으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5년 10년 가면 지금 짓는 병원들한테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본교도 5~7등 하던 대학이 18등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가만있으면 학교가 30등 하게 되면 그때는 회복하기가 어려워 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랭킹 떨어진 이런 것을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우재단과 결별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의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대학 교와 병원은 국가에 헌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재력 있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앉아서 전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의장 박영무 : 병원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과 결산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보여야하는데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대처하면 늦습니다. 평의원회 차원에서 기록을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비회계 관련해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평의원 박철균 : 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그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의장 박영무 : 감사 주무부서가 기획처이기 때문에 기획처에 있을 겁니다.

평의원 박철균 : 유승익 교수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평의원 이재호 : 유승익 교수도 왜 학교가 그 내역을 그렇게 안 밝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 펀드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다 공개됐는데요.

의장 박영무 : 학교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밝히려하지 않으려하니 감독기관인 교과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평의원회에서 감독기관의 감사 여정 결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것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사는 한 단계 위에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김관균 : 정보 공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의장 박영무 :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가는 거고 그런 거지요.

평의원 박철균 : 작년에 감사를 했었지만, 그때의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되는 셈인데요. 유승익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저는 다른 섹터를 담당해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없었지만 최종 정리하는 과정은 다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 한 번 더 교내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해보게 하는 것, 그 때는 내부 사람으로만 감사를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사를 투입하는 감사를 같이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감사원이나 교과부에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작년에 내부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법해석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

< 간서명 란 >

의장 박철균

는 것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총무처장님께 실무부서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밝혀졌다면 당장 전문가에게 법해석에 관한 자문을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무부서 차원의 대처라는 판단이 듭니다.

평의원 김관균 : 공개 안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장 박영무 : 그래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유승익 교수님께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면, 더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도 진행하고 정보를 집약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의혹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어요. 교내 그런 감사제도가 규정상 가능한가요?

평의원 박철균 : 기획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의장 박영무 : 기획팀에서 교내감사 권한 있나요?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사 김근태 :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던 지 위원구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감사에 대한 주관은 기획팀에서 한다는 건데, 이는 감사에 대한 준비,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지 주체는 아닙니다. 감사 구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방법을 선택한 사람으로 구성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평의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 위시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불법, 위법 이것을 나누어서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 법이 나오기 전에는 위법 아니죠. 그 법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 전에 것을 위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위법이거나 아니나는 알 수 있겠죠.

평의원 이재호 : 근데 취지를 보면 위법일 것 같은데요.

평의원 조중열 : 2007년 12월 법이 나오기 전에는 위법이 아니죠.

평의원 이재호 : 아마 주변에 다른 학교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평의원 조중열 : 예를 들어 MMF에 넣는 것도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법으로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게 위법하니까 어떻게 처벌을 해야지 이런 측면보다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단순히 위법했어 라고 하는 것과 아니나는...

의장 박영무 : 교내 감사는 기법과 과정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작년의 감사를 보

< 간서명 란 >

의장 11/22/13

았듯이.

평의원 박철균 : 사실 학내문제는 가능한 한 학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내가 주관하는 사람으로 해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 상위기관, 공식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부서를 정해놓고 자체 행정지도 감사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시스템 강화 이런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던 것 같고, 지금 감사를 한다면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더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학내에서 살펴보고, 정말 이것은 상급기간에 올려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하는 게 어떨까요. 한 번 더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게 좋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 감사를 한다면 근거, 정당성, 권위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평의원 박철균 : 제 기억으로 교비부분에 대한 감사를 법인이 아니고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뢰해서 총장이 결정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의뢰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어서, 예전에 예산팀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본 품의도 했었는데 교과부 감사가 나오는 바람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주무부서에서 해석은 다시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하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요.

평의원 김관균 : 만약 감사를 한다면 회계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외부인이 감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의장 박영무 : 일반 직원에 대한 감사는 교내에서 가능하지만, 전현직 총장과 처장들의 관련되면, 자기가 자기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의원 조중열 : 박철균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 모든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평의원 박철균 : 현직자가 아니라 과거 보직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제 생각으로는 평의원내에서 총장님께 감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오늘 총무처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만족할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지만 지금 감사를 해서 누구를 찾아내고 잘잘못을 구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감사를 한다면 차라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만들어져 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나가면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쪽으로 감사를 해야지, 누구를 잡겠다고 감사를 하면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 같고, 어

< 간서명 란 >

의장) 11/5. 2013

쩔 수 없이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면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일이고, 지금 2010년인데, 지금 와서 손실 원인이 뭐고 잘잘 못을 누가 했고 이것은 지금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사결정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 오류를 하지 놓지 않도록, 감사의 목적은 그게 되어야죠.

평의원 주동표 : 발전적으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알려달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진상을 조사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는다 이런 문체를 하는 거고, 전혀 목적이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기 위해서 감사를 신청하자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평의원회에서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감사 수준을 요청을 해보고 학교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의원 임원형 : 평의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회 목적 자체도 학교 문제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 전에 작년에 학교 감사를 했었고 그동안 학교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외부감사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 모든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되, 감사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구성원 대표시니까 구성원과도 소통을 통해서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우여러분이 현재는 모르는 상태로 감사가 떴다고 하면 학우여러분들이 학교가 큰 일이 생겼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다 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학내 구성원이 해결할 수 있는 정보공개요구 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동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의원 김용호 :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릴 때는 아까 평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알린 상태에서 공유되고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학내 문제는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박영무 : 정리해봅시다. 1차적으로 평의원회와 학교 당국하고 공동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이 충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감독기관인 교과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내 감사단의 구성 전으로 또 평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불편하니 구성방안을 의장께 위

< 간서명란 >

의장 115-07318

임을 해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위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의장에게 위임된 걸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감사결과에 대해서 평의원회에 1차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죠. 평의원회 1차 보고가 되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죠.

의장 박영무 : 자문의전서 작성도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록을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다음 학칙 남았죠?

의장 박영무 : 오늘 마지막 안전인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기획팀장님!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본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교과부에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통보(2010.3.2)에 따른 약학대학 신설과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약학대학 정원 반영 및 자유전공학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칙 제4조(기구)를 보시면 별표1(기구)에 '약학대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칙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의 별표5(학사과정)에는 대학, 학부, 전공, 학위명에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전공, 약학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칙 제21조(학생정원)의 별표9(학사과정 입학정원)에는 신설한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20명 배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인문학부, 사회과학부의 입학정원을 각 10명씩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문학부, 사회과학부에서 각 5명씩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였습니다.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입학정원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00명(인문사회계열 50명, 이공계열 50명), 2010년도 80명(인문사회계열 40명, 이공계열 40명)이었으며 2011년도의 경우 10명이 증원된 90명(인문사회계열 40명, 이공계열 50명)이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과대학에서 이공계열 정원에 대한 환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은 단과대학별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간사 김근태 : 단과대학별로 합의가 되고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장 박영무 : 위원님들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일동 : 예.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의장 박영무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7일

의장 박영무

부의장 주동표

평의원 조중열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박철균

평의원 임재수

평의원 김용호

평의원 임원형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박상호

기록 진성호

< 간서명란 >

의장